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CHINA NEWSLETTER

October, 2026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 칼럼 ▐

01.중국 상표 거절·부등록 사유 변화 및 실무 상표전략
02.〈제 3 편〉 근무시간·휴식, 그리고 파견근로자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대응 가이드

▌외부 기고 ▐

01.중국시장 진출 K-패션, IP 방어막부터 쳐라 (법률신문 2026.10.14)
02.중국 반덤핑 제도의 법적 구조와 운용 -2026 년 시행 개정「대외무역법」과 최근 무역구제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협회 2026.09)

▌최신 법령/판례 ▐

1.「신취업형태 노동자 권익보장 방법(의견수렴안)」 (新就业形态劳动者权益保障办法 （征求意见稿）), 2026.11.08 의견 제출 마감
2.「국가지식재산권국·해관총서의 지식재산권 협동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国家知识产权局 海关总署关于强化知识产权协同保护的意见，国知发保字〔2026〕30 号), 2026.10.14 공개
3.「전기오토바이 및 전기경량오토바이용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구사항」(电动摩托车和电动轻便摩托车用锂离子电池安全要求, GB 36672—2026), 2027.07.01 시행
4.「최고인민법원의 형사범죄와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刑事犯罪的民事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 法释〔2026〕19 号), 2026.09.22 시행

▌법률 칼럼 ▐

01. 중국 상표 거절·부등록 사유 변화 및 실무 상표전략

중국은 2026년 6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1983년 상표법 시행 후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종전 8장 73개 조문을 9장 87개 조문으로 확대하면서, 상표 등록요건과 부등록 사유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악의적 출원, 실제 사용, 등록 후 관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상표전략도 선출원·등록 중심에서 벗어나, 출원 가능성, 사용 적법성, 권리 유지 및 분쟁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 상표출원

중국의 상표출원 환경은 여전히 선출원주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에게는 브랜드 공개와 중국 출원 사이의 시차도 주된 위험요소이다. 한국에서 선공개한 영문·한글·중문 브랜드가 온라인 플랫폼과 전시회, 유통 협상 등을 통해 중국에 즉시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핵심적인 브랜드의 선행조사와 출원 시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상표심사는 실체심사 과정에서 모든 거절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당연히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가 아니다. 현행법 제29조 및 2027년 시행법(신법) 제33조는 심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설명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신청인이 설명이나 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기관은 심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출원 전 단계에서 거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중국 상표의 등록 가능성 검토는 유사상표 검색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는 ① 출원행위 자체의 적법성, ② 상표로 등록·사용할 수 없는 공익적 금지사유, ③ 식별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력과 기능성, ④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충돌, ⑤ 저명상표·대리인 선점·지리적 표시·기타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중국 상표 거절·부등록사유의 기본 구조 및 주요 변화

아래 표는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의 신구 대조표 및 2019년·2026년 상표법 원문을 기초로 하여,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거절사유'는 좁은 의미의 직권심사상 거절근거 뿐만 아니라, 초심공고 후 이의 또는 등록 후 무효선고 단계에서 등록을 막는 부등록사유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주요 쟁점	2019년 현행법	2027년 시행법(신법)	주요 변화 및 실무상 의미
법체계·등록조건	8 장 73 조. 등록요건이 여러 장에 분산	9 장 87 조. 제 2 장(제 14~25 조)에 '상표등록의 조건' 집중 배치	등록요건과 부등록사유의 체계화. 출원 전 적격성 검토의 중요성 확대.
상표사용·인터넷 사용	제 48 조에서 상표사용 정의	제 2 조로 이동하고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사용을 명문화	온라인 판매·광고·SNS·라이브커머스의 사용자료가 권리유지와 분쟁에서 더욱 중요.
등록가능 표장·기능성	제 8 조: 문자·도형·3D·색채조합·소리 등 / 제 12 조: 3D 기능성	제 14 조: 동적표장(动态标志) 명시 / 제 18 조: 3D·색채·소리·동적효과의 기능성 배제	비전통적 상표의 보호영역은 확대되지만 기술적 기능의 상표독점은 제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주요 쟁점	2019년 현행법	2027년 시행법(신법)	주요 변화 및 실무상 의미
비사용·비정상 출원	제 4 조: '비사용 목적의 악의적 출원' 거절	제 19 조: '비사용 목적 및 정상적 생산·경영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면 부등록. 기망·부정수단 출원도 명문화. 제 50 조·제 54 조와 연계됨.	주관적 '악의'에서 객관적 사업수요 기준으로 이동. 기존 방어등록도 무효·행정제재 리스크를 함께 점검해야 함.
절대적 금지·지명	제10조: 사용금지(국가표장·기만성·부정적 영향·지명 등)	제15조: '등록 및 사용' 금지를 명시, 당 관련 표장 추가·기만성 구체화·'공서양속' 문언 도입 / 지명은 제16조로 독립	공익적 금지사유를 보다 명확히 구조화. 기만성은 품질 뿐만 아니라 공정·원료·산지 오인까지 명시.
식별력	제11조: 통용명칭·설명표장·기타 식별력 결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가능	제17조: 기본 구조 유지	설명성은 **후천적 식별력**(상표법상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으로 치유 가능하나, 기만성·공서양속과 구별 필요.
선행상표 충돌	제30조: 이미 등록 또는 초심결정된 상표와의 충돌	제20조: 이미 등록 또는 '선출원(在先申请)'된 상표와의 충돌 / 일반적인 법 위반 거절은 제34조.	선출원주의를 등록조건에 직접 반영하고, 선행상표 충돌과 일반 거절조항을 분리.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주요 쟁점	2019년 현행법	2027년 시행법(신법)	주요 변화 및 실무상 의미
저명상표·선행권익	제13조·제15조·제16조·제32조	제21~24조. 비유사 상품의 저명상표 보호에서 중국 내 등록요건 삭제. '선행권리'는 '선행 적법 권익', 선사용 상표는 '고의' 선점 규제.	미등록 저명상표의 **교차류** 보호 가능성 확대. 거래상대방·바이어 선점에 대비하여 사전 인지 및 증거보존 필요.
이의·심리절차	제33조: 이의기간 3개월 / 일부 절차별 중지규정	제36조: 이의기간 2개월, 절대·상대 사유를 조문별 구분 / 제41조: 심리중지 통합 규정	상표 모니터링과 내부 의사결정 속도 제고 필요. 인용상표 제거절차와 복심의 병행전략 중요.
등록 후 사용·권리유지	제49조: 3년 불사용은 주로 제3자 신청에 따른 취소	제55~제57조: 라이선스 품질관리·오도사용 제재·CNIPA 직권 불사용취소 근거 신설	등록 후 실제 사용·사용방식·품질관리까지 지속적 컴플라이언스 대상으로 전환.
자진말소·1년 격리기간	제50조: 취소·무효·미갱신 후 1년간 동일·유사 상표 등록 제한. CNIPA 심사 실무상 3년 불사용취소는 제외.	제49조: 자진말소(申请注销) 공고일부터 1년간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 등록 제한.	유휴상표 정리 시 권리소멸 시점과 격리기간을 함께 검토할 필요.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표에서 언급한 신법 제36조는 공익적 사유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선행상표·저명상표·대리인 선점·지리적 표시·선행권익 등 상대적 사유는 선행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도록 구분한다. 등록 후 무효절차도 제50조(절대적 사유) 및 제51조(상대적 사유)로 동일한 구조를 반복한다.

3. 사용 목적 없는 악의적·비정상 출원

현행 상표법 제4조는 2019년 개정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악의출원 방지조항으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은 거절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상표심사심리지침」 해설(《商标审查审理指南》, 2022년 2월 8일 해설자료 공개)에 따르면, 현행 제4조의 적용에서는 신청인의 존속기간·업종·영업범위, 전체 출원건수와 상품류, 단기간 집중출원 여부, 타인의 유명상표·상호·성명 등의 반복 출원, 대량 양도·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방어 목적으로 핵심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다른 상품·서비스에 적정한 범위에서 출원하거나, 현실적으로 예정된 미래사업을 위하여 적정 수량을 선출원하는 경우는 곧바로 제4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공식 지침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2027년 시행법 제19조는 판단의 구조를 보다 객관화하였다. 신법은 '악의'라는 단어를 제1항에서 삭제하고, 사용목적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생산·경영의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기준이 신규 출원의 심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법 제50조는 제19조 위반 등록을 절대적 무효사유로 편입하여,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무효를 선언하거나 타 단위 혹은 개인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과거에 형성된 대규모 방어등록도 신법 시행 후에는 각 등록이 실제 사업, 예정사업 또는 합리적인 브랜드 방어수요와 연결되는지를 따져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법 제87조는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등록에 대한 신설 기준의 적용 여부는 경과규정과 관련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한편,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망·부정수단에 의한 출원을 규율하는 단계이다. 현행 상표법 제44조 제1항은 이미 등록된 상표가 기망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이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고하거나,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무효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달리 말해, 현행법에서는 이를 주로 등록 후 무효사유의 형태로 규율한다. 이에 반해, 2027년 시행법 제19조 제2항은 기망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상표의 등록 조건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신법 제50조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관리부문이 무효를 선고하거나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개정법은 기망·부정수단에 의한 출원을 출원단계의 부등록사유와 등록 후 무효사유로 연계하여 규율하는 구조를 취한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이나 명의도용 등 출원행위 자체의 부정한 성격을 등록심사 단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되었다.

신법 제54조는 이러한 규율에 더하여, 행정적 책임까지 결합한다. 신법 제19조 위반 신청을 포함한 일정한 악의적 상표등록 신청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집행기관은 경고를 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 방어출원을 운용하는 기업은 현재사업, 예정사업, 시장확장계획, 라이선스 구조, 핵심브랜드 방어 필요성과 출원범위 사이의 합리적 연계성을 내부 문서로 보존해둘 필요성이 있다.

4. 상표 자체의 등록·사용이 금지되는 절대적 사유

현행 상표법 제10조는 제3자의 선행권리와의 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표장의 상표로서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2027년 시행법 제15조 본문은 등록금지와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주요 변화가 뚜렷하다. 첫째, 당기·당휘·훈장이나 중요한 이론적 성과·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상징적 요소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별도 금지항목으로 신설하였다. 둘째, 기만성 조항은 종전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서 '품질·공정·원료 등 특징 또는 산지'로 구체화하였다. 셋째, 종전 '사회주의 도덕풍속에 해롭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이라는 표현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은 '공서양속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으로 변경되었다. 기만성 판단의 핵심은 표장이 전달하는 객관적 메시지와 실제 상품·서비스의 속성이 일치하는지이다.

기만성은 설명적 표장과는 구별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전형사례도 설명표장은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기만적 표장은 공익적 이유로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구분한다.

5. 공서양속·부정적 영향, 인터넷·외국어 브랜드

현행 제 10 조 제 1 항 제 8 호는 사회주의 도덕풍속에 해롭거나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표장을 금지한다. 2027 년 시행법은 이를 제 15 조 제 9 호의 '공서양속 위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특정 개인의 사익보다 사회공공이익과 공공질서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사례로, '鸭子'는 일반적으로 오리를 의미하지만 특정한 속어 문맥에서는 성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이 공개한 2018 년도 전형사례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해당 표현의 문자조합, 문맥, 지정 서비스, 접촉 소비자층 등을 종합하여 부정적 사회영향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영문·한글·기타 외국어 브랜드를 선정할 때에도 사전적 번역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중국어 음역, 동음어, 인터넷 속어 및 실제 온라인 용례까지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지명표장

현행법은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과 공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을 원칙적으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지명 외의 다른 의미가 있거나 단체표장·증명표장의 구성부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된다. 2027년 시행법은 이 규정을 제16조로 독립시키면서 **'등록 및 사용 금지'**를 명시하였다.

한편, 거절복심(驳回复审)에서 실무상 중요한 논리는 ① 해당 문구가 지명 외에 더 강한 다른 의미를 갖는지, ② 다른 문자·도형과 결합하여 전체표장이 독립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지, ③ 사용을 통하여 특정 사업자와의 안정적인 대응관계가 형성되었는지이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의 2024년도 전형사례인 'BRTV北京时间' 사건에서도 '北京'만 분리하여 보지 않고 전체표장이 행정구역명 '北京'과 구별되며, 장기간·대량 사용으로 신청인과 유일한 대응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들어 등록가능성을 인정하였다.

7. 식별력 부족과 기능성

현행 제11조와 신법 제17조는 통용명칭·도형·모델, 상품의 품질·주요 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기타 특징만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장이라도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하고 출처식별 기능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식별력 거절에서의 핵심은 상표법상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经过使用取得显著特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중국에서의 사용기간과 지속성, 판매지역·매출·시장점유율, 광고투입, 주요 언론보도, 전자상거래 판매자료, 검색지수, 소비자 인식자료 등으로 해당 표장이 특정 출처를 가리키는 표지로 기능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기능성에 관한 규정은 2027년 시행법(신법)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현행 제12조는 3차원 표장의 형상을 중심으로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발생한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의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법 제18조는 이를 3차원 표장뿐 아니라 색채조합·소리·동적표장의 색채·음향·동적 효과까지 확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앱 로딩 애니메이션, 차량 인터페이스의 동작, 게임·엔터테인먼트의 로고 모션 등을 동적상표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확대되었으나, 움직임이나 소리가 기술적 기능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오히려 제18조의 기능성 배제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8. 선행상표와의 충돌: 현행 제30조와 신법 제20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거절사유 중에 하나는 선행상표와의 충돌이다. 현행 제30조는 신청상표가 동일·유사 상품에 관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초심결정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거절하도록 규정한다.

2027년 시행법(신법) 제20조는 선행상표 충돌만을 독립된 등록조건으로 두고 **'이미 등록되었거나 선출원된(在先申请) 상표'**와의 동일·유사를 금지한다. 그 밖에 법률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을 거절하는 일반조항에 대해서는 제34조로 이동하였다. 법문언상으로는 '초심결정'에서 '선출원'으로 기준을 바꾸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유사성 여부는 표장 자체의 문자·호칭·관념·전체 인상과 상품·서비스의 기능·용도·판매경로·소비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국 실무에서는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类似商品和服务区分表)**」의 세부 유사군(중국 상표심사에서 상품·서비스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위 분류단위를 일컫음)이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다만,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전형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구분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장의 관련성 및 혼동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9. 저명상표·대리인 선점·지리적 표시·선행권익: 상대적 부등록사유

출원단계 직권심사만을 '거절사유'로 이해하게 되면, 중국 상표분쟁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초심공고 후 이의 또는 등록 후 무효선고에서는 저명상표, 대리인·대표자 또는 거래관계자에 의한 선점, 지리적 표시, 성명권·상호권·저작권 등 선행권리 및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선사용상표가 핵심 부등록사유가 된다.

저명상표는 신법에서 보호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제13조 제3항은 비유사 상품에 대한 확장 보호를 '중국에 등록된 저명상표'에 한정하고 있으나, 신법 제21조 제2항은 '중국에 등록된'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또한, 대리인·대표자 또는 계약·업무거래 관계자가 타인의 선사용상표를 알고도 선점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15조, 신법 제22조가 적용된다. 한국 기업이 중국 유통사·바이어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OEM 업체·대리상과 협상하면서 브랜드를 먼저 공개할 때에는 계약서, 이메일, 위챗 대화, 샘플 송부, 전시회 미팅자료 등 상대방의 사전 인식을 보여주는 증거를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선행권리와 선사용상표를 다루는 조항도 문언이 바뀌었다. 현행 제32조의 **'기존 선행권리(现有的在先权利)'**는 신법 제24조에서 **'기존 선행 적법 권익(现有的在先合法权益)'**으로 변경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의 선점을 '부정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서 '고의로' 선점한 경우로 표현을 바꾸었다. 이는 보호대상과 주관적 요건을동시에 재구성한 것이므로, 향후 시행규정과 심판 내지 판례에서 구체적 기준이 형성되는지를 추적·관찰하여야 한다.

10. 2026년 개정법(2027년 시행 신법)의 흐름

이번 개정의 정책적 방향은 거절사유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출원·등록취득주의 자체는 유지하면서 비사용 비축과 오도적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등록 후 사용에 대한 규율(상표 컴플라이언스)까지 확장하는 데 있다고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신법 제2조는 상표사용의 개념을 총칙으로 옮기고,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사용도 상표사용에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신법 제19조는 실제 사용목적 없이 정상적인 사업수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을 제한한다. 나아가, 신법 제56조는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공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시정명령·벌금·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신법 제57조는 "3년 연속 불사용" 혹은 **"통용 명칭화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종전의 제3자 취소신청뿐 아니라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한편, 등록상표의 불사용 및 권리소멸 이후의 처리에도 변화가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취소가 가능하며, 신법 제57조는 이에 더하여 상표관리기관의 직권취소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등록이 소멸된 후 동일·유사 상표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1년의 격리기간도 축소된다. 현행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법 제50조의 법문은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선고되거나, 기간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을 제한한다. 다만 CNIPA 심사 실무에서는 3년 불사용으로 취소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공고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법 제49조는 이를 **'상표등록인이 스스로 말소를 신청한 경우(申请注销)'**로 한정하였다. 신법상 격리기간은 자진말소 공고일부터 1년간 타인의 동일·유사 상품에 대한 동일·유사 상표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말소된 상표권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법 제56조의 이른바 '꼼수 상표(心机商标)', 즉 공중을 오도하는 상표사용에 대한 규율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조항이다. 신법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이면 그 5배 이하의 벌금,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이면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법 제55조는 피허가자가 품질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사용허가계약 해지권을 인정한다.

11. 거절결정 후 대응: 복심·분할·인용상표 제거·심리중지

현행법 제34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절복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심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7년 시행법 제37조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한을 유지한다.

부분거절(部分驳回)의 경우에는 「상표법 실시조례」 제22조에 따른 **상표분할출원(商标注册申请分割)**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초심결정된 지정상품 부분을 별도 신청으로 분할하면 원 출원일을 유지하면서 등록가능 부분의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 분할신청은 부분거절 통지 수령 후 15일 내 제기하여야 한다.

선행등록상표를 이유로 거절된 사건에서는 **'유사성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상표가 등록 후 3년이 지났고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면 3년 불사용취소를, 악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의적 선점이나 기타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선고를 병행하여 인용상표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신법 제 41 조는 이의심사, 거절복심, 부등록복심 및 무효선고 사건에서 선행권익의 확정이 다른 법원 또는 행정사건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종전에도 일부 절차에서 중지제도가 존재했지만, 신법은 적용 절차와 범위를 집중적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관련 취소·무효사건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12. 거절·복심에서의 증거전략

중국 상표 거절복심은 법률요건, 입증대상 사실, 해당 사실에 직접 대응하는 증거의 단계적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절 유형별로 필요한 증거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 (증거파일의 구분) 상표 관리 차원에서는, ① 매출·송장·광고·전자상거래 데이터 등 실제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와 ② 사업계획·제품라인·브랜드 확장·방어출원 필요성 등 출원·유지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의 증거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불사용취소와 제19조·제50조의 무효분쟁에서 각각 다른 입증 기능을 가질 수 있다.

- (비사용·비정상 출원) 실제 사업범위, 현재·예정 사업계획, 제품개발 일정, 유통계획, 브랜드 포트폴리오, 방어출원의 필요성과 범위를 보여주는 내부 의사결정자료가 중요하다.

- (기만성) 원료구매계약, 성분·품질검사보고서, 제조공정 자료, 제품설명서, 업계표준 등 표장이 암시하는 내용과 실제 상품특성이 일치한다는 자료가 핵심적이다.

- (공서양속·부정적 영향) 신청인의 매출보다는 해당 표현의 객관적 의미, 사회적 인식, 사전·언론·업계자료, 인터넷 용례와 소비자 접촉 맥락이 중요하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식별력) 사용기간, 판매지역, 매출, 시장점유율, 광고투입액, 언론보도, 전자상거래 판매자료, 검색자료, 소비자 인식조사 등이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经过使用取得显著特征)"**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지가 핵심이다.

- (선행상표 충돌) 표장의 문자·호칭·관념·전체 인상과 함께 지정상품의 기능·용도·판매경로·소비자층, 중국 유사군, 인용상표의 존속·사용 상태를 함께 검토한다.

- (대리인·거래관계자 선점) 계약서, 이메일, 위챗, 전시회 미팅기록, 샘플 송부자료 등 상대방이 신청 전부터 해당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는 선점 자료가 특히 중요하다.

13. 기업이 주의할 실무적 운용 사항

2026년 상표법 개정에 따라 중국 상표관리는 출원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넘어, 브랜드의 선정·출원·사용·유지·분쟁대응을 연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2027년 시행법은 출원 목적과 실제 사업수요, 등록 후 상표의 사용방식, 장기간의 불사용 상태까지 규율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상표업무를 지식재산 담당부서만의 등록관리 업무로 보는 접근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적 위험과 실무상 운용 사항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첫째, 브랜드 선정 및 출원 단계의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선행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상표 자체에 기만적 표현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지명이나 상품의 품질·원료·공정 등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인지, 중국어 음역 또는 동음어가 예상하지 못한 의미를 발생시키는지까지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품명이나 브랜드가 이미 결정된 이후 법무부서에 상표출원을 의뢰하는 방식보다,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상표법상 등록 및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방어출원과 상표 포트폴리오의 합리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4조가 비사용 목적의 악의적 출원을 규제하였다면, 신법 제19조는 사용 목적이 없으면서 정상적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인 생산·경영의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는 출원을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여러 상품류에 폭넓게 방어출원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 범위와 현재 또는 예정사업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브랜드의 인접 상품류 보호, 향후 사업확장 계획, 과거 선점 피해 또는 업계의 상표브로커 위험 등을 내부적으로 기록해 두고, 장기간 사업과 무관하게 방치된 상표는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 이후의 실제 사용방식도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사실은 해당 표장을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법 제56조는 등록상표를 공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행정제재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일부 문구를 확대하거나 분리하여 상품의 품질·원료·제조공정·산지 등에 관한 사실표시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상품의 속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제품 포장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SNS 광고,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등 온라인 마케팅 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브랜드팀·마케팅팀과 법무·IP 담당부서 사이의 사전검토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특정 원료의 함유, 전통적 제조방식, 특정 지역과의 관계 등을 연상시키는 상표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시 전에 해당 표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케팅 효과를 이유로 등록된 상표의 특정 부분을 실제 의미보다 과장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표법뿐 아니라 광고·소비자보호 관련 규제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 형태와 실제 사용 형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표사용 증거의 상시적인 축적·보관 체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신법 제57조는 기존의 제3자 신청에 의한 3년 불사용취소에 더하여 일정한 경우 상표관리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등록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서, 주문서, 세금계산서, 제품사진, 광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고자료, 전자상거래 판매기록, 웹페이지와 SNS 게시물 등 중국에서의 실제 상표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표별·기간별로 정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법이 인터넷을 통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상표사용의 범위에 포함시킨 만큼 전자적 사용자료의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 때 실제 사용증거와 출원·보유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는 3년 불사용취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이며, 후자는 신법 제19조 및 제50조와 관련하여 대규모 출원이나 방어등록이 정상적인 사업수요에 기초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향후 사업계획, 신규 제품개발 자료, 해외시장 진출계획, 브랜드 확장전략 등은 실제 사용증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해당 상표를 출원·보유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중국의 거래상대방과 외부 협력업체에 대한 상표관리도 내부 컴플라이언스의 일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 바이어, 유통업체, 대리상, OEM·ODM 업체 등에게 브랜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이메일, 위챗 기록, 샘플 전달자료 등을 보존하여 상대방이 해당 상표를 언제부터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상대방에 의한 선점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 제15조·제32조 및 신법 제22조·제24조에 따른 권리구제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광고대행사나 전자상거래 운영업체가 기업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준, 사전승인 절차 및 위법사용에 대한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이후의 모니터링과 분쟁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 신법은 초심공고 후 이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기업은 중국 내 유사상표 출원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출원이 발견되면 사업부서와 법무부서가 단기간 내에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사 출원이 선행상표를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도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인용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3년 불사용취소 가능성, 무효사유, 권리양도 또는 기타 해결 가능성을 같이 검토하여야 한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2027년 시행법(신법) 아래에서 중국 상표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은 각 상표의 출원 이유와 사업상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 적법하게 사용하면서 그 사용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업은 상표출원 단계의 법률검토와 등록 후의 사용·증거관리·모니터링을 분리된 업무로 보지 않고, 브랜드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B 사를 대리하여 중국 내 상표 등록, 디자인권 출원 및 물품공급계약 자문
- D 사를 대리하여 중국 내 상표권 분쟁 자문
-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S 사를 대리하여 중국 내 유사상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검토 및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자문
- 국내 의류업체를 대리하여 의류 브랜드 인수 관련 중국법인 법률실사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02. 〈제 3 편〉 근무시간·휴식, 그리고 파견근로자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대응 가이드

—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표가 다르다면 —

들어가며

실사 현장에서는 이런 장면을 종종 마주합니다. 초과근무 승인 제도는 깔끔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근로자 출입기록이나 인터뷰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승인받은 적은 없지만 사실상 매번 야근했다"는 답변이 나오는 순간, 서류상의 정합성과 현장의 실제 사이에 벌어진 틈이 드러납니다.

파견근로자 쪽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항목 구성 자체가 다르거나, 회사 내부의 노동자 권익 보호 제도나 시스템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제1편에서 EU CSDDD의 개념과 실사 점검 기준을, 제2편에서 여성 근로자 보호 관련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노동 영역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두 가지 주제, 근무시간·휴식과 파견근로자 처우를 다룹니다.

1. 근무시간 및 휴식

① 표준근무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국무원 직원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표준근무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또한 「노동법」 제41조는 사용자가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1일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제안: 연장근로 한도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연장근로 승인 내역과 실제 근태기록 간 불일치, 또는 월 누적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태관리 시스템에서 월 누적 연장근로시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36시간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 경고 또는 승인 제한 기능이 작동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초과근무수당 배율과 산정 기준금액(计算基数)

「노동법」 제44조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근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일 연장근무는 정상임금의 150% 이상, 휴식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 200% 이상, 법정 공휴일 근무는 대체휴무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3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국 단위 법령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배율과 더불어 노동계약에서 정한 근로자 본인의 일·시간 임금 등을 산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임금항목과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 방식 등은 지역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시는 기준금액을 원칙적으로 직위에 상응하는 정상 출근 월 임금으로 정하면서, 연말 상여금, 교통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등 특수한 사유로 지급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계약에 월 임금이 명확히 약정되어 있으면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약정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이행이 약정과 다르면 실제 이행된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계약에 명확한 약정이 없으면 단체계약의 약정에 따르며, 노동계약과 단체계약 모두 월 임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정상 출근 월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임금의 70%를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산정한 기준금액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제안: 초과근무수당의 기준금액은 지역별 규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계약서에 기준금액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성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산정 기준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기준금액 산정 기준을 노동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

근로자의 근속연수(工龄)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다르며(1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15일),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급여의 200% 상당(법정 표기는 300%이나 정상 임금분이 포함되어 실질 200%)을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사용 연차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일정을 정해 주었음에도 근로자가 본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힌 경우에는 정상 근무에 대한 임금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연차휴가 일수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工龄)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한 누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즉 신규 입사자도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누계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연간 10일, 20년 이상이면 연간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입사연도의 법정 연차휴가 일수는 해당 회사에서의 남은 달력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계산하며, 산정 결과 1일 미만인 부분은 제외합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또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내에 부여하되, 생산·업무 특성상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1개 연도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습니다(「직공 유급연차휴가 조례」 제5조). 다만 이월된 연차의 구체적인 사용 기한이나 미사용 연차의 자동 실효 처리에 관해서는 중국법상 명시적인 전국 단위 규정이 없으며, 실무상으로는 이월 가능 기간을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 이월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등이 해당 회사 규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이월이나 사용기한에 동의하였더라도,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 3월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제안: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신청에만 맡겨두는 사업장은 연말에 미사용 연차 보상 요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계획을 통일적으로 정하고,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연말에 서면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현재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채용 시 이전 직장 근속기간에 대한 확인 절차(사회보험 납부 기록 등)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월 규정을 둘 때는 이월 가능 기간과 근로자의 동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 휴가 배정 및 미사용 사유를 기록하여 미사용 연차 보상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식제도 소결

근무시간·휴식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는 대부분 법정 기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를 실제 운영 절차와 내부 규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장근로 한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연장근로 승인 내역과 실제 근태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기준금액를 노동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법인 소재지의 지방성 규정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당이 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연수 산정 기준이나 이월·실효 절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차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별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규정과 운영 절차가 일관되게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태관리 시스템 점검:** 연장근로 승인 절차와 실제 근무기록이 연동되고, 월 누적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자동 경고 또는 승인 제한 기능이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계약서 및 내부 규정 정비:**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금액, 연차휴가의 발생·이월·실효 기준 등을 법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성 규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합니다.
- **입사 단계 관리체계 구축:** 신규 입사자의 이전 근속기간을 확인하여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와 같은 관리체계를 마련하면 근무시간·휴식 제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컴플라이언스 및 ESG 실사 대응 측면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

① 파견근로의 사용 범위 및 비율 제한

「노동계약법」 제66조 및 「노무파견잠행규정」 제3조·제4조는 파견근로를 임시적·보조적·대체적 업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적 업무는 존속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 보조적 업무는 주된 영업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력 업무, 대체적 업무는 정규직 근로자의 휴직·휴가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사업주가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자 수(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한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제안: 실무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하거나, 핵심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배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비율과 담당 업무가 법령상 허용 범위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계약법」 제63조는 사용사업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사 근로자와 동일한 보수 분배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노동'의 판단 기준과 '임금'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상 제안: ESG 실사에서는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구분하거나, 기본급은 낮게 책정한 뒤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차등 지급하여 사실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지적됩니다. 직무별 업무 내용과 임금·복리후생을 비교·점검하여 합리적인 차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사회보험 가입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타지역 파견)에는 사용사업주 소재지의 규정에 따라 가입·납부하여야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지역에 지사 등 분사무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를 대신하여 가입·납부 절차를 처리합니다(「노무파견잠행규정」 제18조 및 제19조).

실무상 제안: 파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뿐만 아니라 가입 지역이 실제 근무지 및 관련 법령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 파견의 경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우 사회보험 미가입이나 잘못된 지역 기준에 따른 가입이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파견계약과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채용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근로자 전가

「노동계약법」 제9조는 "사용자(用人单位)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류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기타 명목으로 근로자로부터 재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직뿐 아니라 정규직 채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임금 공제와 관련해서는 「임금지급 잠정규정(工资支付暂行规定)」 제15조가 개인소득세,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법원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부양비, 양육비 및 법률과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비용의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적금 공제는 「상해시 기업임금지급방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금지급 잠정규정」 제16조에 따라 노동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월 공제액은 해당 월 임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 후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채용과 교육, 물품 관련 비용은 부담 주체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제안: 채용 관련 비용이나 근무에 필요한 물품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공제가 "회사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서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계약법 제9조 및 임금지급 잠정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⑤ 제3자 인력자원서비스기관을 통한 채용과 이중 수수료 리스크

일부 직원이 제3자 인력자원서비스기관(채용대행사)을 통해 입사하면서 그 기관에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자원서비스업 자체는 「인력자원시장 잠정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조례(人力资源市场暂行条例)」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유상 서비스이며, 근로자가 알선비를 지불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노동계약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첫째, 해당 기관이 인력자원서비스허가증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동 조례 제18조), 서비스 장소에 영업집조·서비스 항목·수수료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제32조)입니다.

둘째, 채용 과정에 기망·강박 등 부당한 수단이 개입되었는지입니다. 동 조례 제27조는 인력자원서비스기관이 사기·폭력·협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공시한 전형적 위반 사례들(무허가 영업, 허위채용, 직접채용 보장 명목 사기, 채용-교육 전환 강매 등)은 대부분 금액이 크고 기망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로, 단순히 실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 이중 수수료 구조 여부입니다. 사용자가 이미 해당 인력자원서비스기관에 채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채용 건에 대해 근로자로부터도 별도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인력자원시장 잠정조례 제27조상 "부당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계약법 제9조는 사용자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이라 제3자 기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용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을 통해 사실상 채용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제안: 협력 관계에 있는 채용대행사가 인력자원서비스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사가 이미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채용 건에서 근로자에게도 별도 수수료를 받는 이중구조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중 수수료 구조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협력기관에 근로자 대상 수수료 수취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파견근로자 이슈 소결

파견근로자 관련 이슈들의 공통점은, 법이 파견을 "예외적 고용형태"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이 예외가 상시적인 인력 운용으로 굳어지면서 원칙과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핵심 업무에 파견인력이 장기 배치되거나 10% 상한을 넘기는 경우, 업무 세분화나 급여 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질적으로 회피되는 경우, 타지역 파견 시 사회보험 가입 지역이 어긋나는 경우, 채용·물품 비용이 임금 공제나 제3자 기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파견근로자 비율·업무가 법정 허용 범위(임시적·보조적·대체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파견근로자와 정규직 간 직무별 처우 차이가 합리적인지 점검합니다.
- 사회보험 가입 지역이 실제 근무지·파견계약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채용•근무 관련 비용이 임금 공제나 제 3 자 기관을 통해 우회 전가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맺으며 - 시리즈를 마치며

지금까지 세 편에 걸쳐 EU CSDDD가 무엇인지, 실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노동 영역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중국에 생산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EU CSDDD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우리 회사가 EU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편입 여부를 먼저 점검할 것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실사 현황 공표 의무가 시작되기 전, 예비 진단을 통해 현재 수준을 미리 가늠해볼 것
- 여성 근로자 보호, 근무시간·휴식, 파견근로자 처우 등 노동 영역의 지역별 세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것
- 정책·규정이 문서로만 존재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것
- 취업규칙 제정·개정 시 요구되는 절차(근로자 의견수렴, 공시·고지)를 이행하여 규정의 법적 효력을 확보할 것
- 발견된 이슈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 단계적으로, 그러나 흐지부지되지 않게 이행할 것
- 실사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발견부터 개선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로 접근할 것

이러한 이슈들은 대부분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원칙을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세부 기준과 지역별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서면 점검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실제 운영 실태를 들여다봐야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평 ESG센터와 상해대표처는 이러한 실사 대응을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사 준비 단계의 예비 진단부터 이슈별 법률 검토, 개선조치 수립과 이행 관리까지 자문해 드리고 있습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 P 사 중국법인을 대리하여 1,200 여 명 규모의 노무 분쟁 자문
- P 사를 대리하여 협력사 직원 채용, 경영상과급, 연차 소진, 의견수렴 절차 등 노무 관련 자문
- M 사를 대리하여 잉여 인원 정리 및 유휴 토지 관련 위약금 이슈 자문
- D 사를 대리하여 중국법인 경제보상금 산정 방식 검토 자문
- 특수설비 제조회사 H 사의 중국 자회사 공장 이전 관련, 800 여 명의 인력 구조조정, 행정인허가, 세무리스크 등에 대한 종합 자문
-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A 사 산하 중국 자회사의 대량 감원에 대한 자문
- 중국 자회사의 파업 문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 자문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외부 기고 ▐

01. 중국시장 진출 K-패션, IP 방어막부터 쳐라 (법률신문 2026.10.14)

국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2025년 중국 최대 스포츠웨어 기업인 안타그룹(ANTA Group)과 합작법인 무신사 차이나(MUSINSA China)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패션·의류·유통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 숏폼 콘텐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결합된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 패션기업의 중국 진출은 대리상·유통상 판매와 프랜차이즈, 합작법인 및 단독출자법인 설립으로 구분된다. 대리상이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시작해서 브랜드와 가격 통제성의 필요가 커지면 합작, 단독출자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무난하다.

합작법인은 지배 구조 교착이나 기술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이사, 총경리, 재무책임자 선임, 추가 투자, 신규 브랜드 출시, 증자·감자·청산 등 주요한 결의요건을 합작계약 및 정관에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당사자 및 관계회사의 경업금지 범위, 위반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跨境电商)는 반복·대량 판매시 관세·인증 부담이나 통관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주문, 결제, 소비자 실명정보가 해관 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상 처리 및 국외이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무역은 정식 수입신고와 관세·수입 증치세 부담을 전제로 하되, 한중 FTA 협정세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강제성 국가표준 적합성, 중문 라벨링 기재, 원산지 관리 및 수입주체 책임구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아울러,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의류, 신발, 가죽제품은 지식재산권 확보와는 별개로 품목별 국가강제표준(强制性国家标准)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포장에 중국어로 제품명, 생산자 명칭·주소, 규격, 등급, 주요 성분을 표시하고 수입제품에는 원산지와 수입자, 총판매자 정보를 라벨로 부착하여야 한다.

합작·위탁생산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리스크는 소재 배합비율, 가공조건, 생산 공정, 원단 사양 등과 같은 핵심 노하우가 중국 파트너에게 유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자료 전달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대상기술과 비밀정보의 범위, 접근·복제·보관·반환·폐기 절차, 제 3 자 제공 요건, 개량·파생기술의 권리귀속 등을 규정해야 한다.

한국 패션 기업은 중국시장 진출 전부터 브랜드명이나 로고에 대한 상표권, 창작성 있는 도안·그래픽에 대한 저작권, 의류·가방·신발 외관에 대한 외관디자인 특허를 적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중국 상표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에 따른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증거보전은 제품기획이나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홈페이지·플랫폼 최초 게시일, 카탈로그, 패션쇼 자료, 광고 계약, 소셜미디어 게시물, 매출자료, 언론보도 등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02. 중국 반덤핑 제도의 법적 구조와 운용 -2026 년 시행 개정「대외무역법」과 최근 무역구제 사례를 중심으로- (무역협회 2026.09)

국제무역에서 덤핑(dumping)이라 함은 흔히 외국 기업이 제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WTO 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은 기업의 덤핑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이라기보다, 회원국이 덤핑 수입에 대하여 어떠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는 협정이다. 수출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당국은 원칙적으로 ① 덤핑의 존재, ②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나 그 우려 또는 국내산업 성립의 실질적 저해, ③ 덤핑수입과 산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확정하여야 한다.

중국의 반덤핑 법제 역시 WTO 규범의 기본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반덤핑 및 반보조금조례(反倾销和反补贴条例)」를 제정하고 WTO 가입을 전후하여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01년 별도의「반덤핑조례(反倾销条例)」를 제정한 뒤 2004년 이를 개정하였다.

최근 법제 변화로는 2025 년 12 월 27 일 개정되어 202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이 있다. 현행「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제 45 조는 다른 국가또는 지역의 제품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들어와 이미 성립된 중국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그 우려를 초래하거나 국내산업의 성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경우 국가가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반덤핑의 기본적인요건 자체는 종전법의 구조를 대체로 계승한 것이다. 다만, 개정법은 제 41 조 제 4 호에서무역구제조치의 회피행위를 대외무역조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 54 조에서 기존 무역구제조치의 조정 등을 포함한 **"반우회조치(反规避措施, anti-circumvention measures)"**의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조사 및 관련조치의 요건·절차를 규율한 시행 법규로는 국무원의「반덤핑조례(反倾销条例)」가 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한편으로, 중국은 개정법 시행 전인 2025년 미국산 광섬유에 대한 중국 최초의 반우회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우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관세율을 확대 적용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같은 해 11월 중단되었으나, 이는 중국이 무역구제조치의 우회행위를 별도의 규율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덤핑 여부 판단 기준

중국 「반덤핑조례(反倾销条例)」 제3조는 덤핑을 정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수입제품이 그 정상가액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덤핑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제품의 중국 내 판매가격이 낮다는 사실 외에도, **"정상가액(normal value)"**과 **"수출가격(export price)"**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비교할 것인지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에 관하여, 동 조례 제4조와 제5조는 각각 정상가액과 수출가격의 산정방법, 제6조는 양자의 비교 및 덤핑마진의 산정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이루어진 동종제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정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국 수출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사용할 수 있다. 정상가액과 수출가격 사이의 차이가 바로 덤핑마진의 기초가 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단계, 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결제조건, 물리적특성 등 가격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조정이 주요 쟁점이 된다. WTO 반덤핑협정 역시 정상가액과 수출가격 사이의 **"공정한 비교(fair comparison)"**를 요구한다(동협정 제2.4조 참조).

실무상으로 수출기업이 제출한 제품별 원가, 관계회사 거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배부방식, 환율 및 운송비 조정 등이 조사기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최종 덤핑마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 「반덤핑조례(反倾销条例)」 제21조는 이해관계인이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상무부가 이미 확보한 사실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기초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한다.

2.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의 판단

기업의 입장에서 반덤핑 사건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덤핑마진(dumping margin)"**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덤핑의 존재만으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중국 조사당국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중국의 동종제품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산업의 성립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현행 중국법과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 산업피해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덤핑조치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산업적인 피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덤핑수입량과 증가율뿐 아니라 수입가격의 하락 또는 가격억제 효과, 국내기업의 생산량·판매량·시장점유율·이익률·설비가동률·고용·재고·투자수익 등 다양한 경제지표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내산업의 실적 악화가 중국 내 수요감소, 원재료 가격상승, 자체적인 설비과잉, 기술 변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 등 덤핑수입 이외의 원인에서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를 피조사 수입제품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귀속 원칙(non-attribution)"**이다. WTO 반덤핑협정도 조사당국이 덤핑수입 이외의 알려진 피해요인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반덤핑 사건에 대응할 때 중요하게 취급되는 지점이다. 중국 상무부는 2009년 2월 한국·태국산 테레프탈산(对苯二甲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0년 8월 정제테레프탈산(PTA, Pure Terephthalic Acid)에 대해 최종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덤핑마진 산정뿐만 아니라 중국 제소기업이 주장한 산업피해와 한국산 수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고, 중국 하방산업에서 한국산 제품이 수행하는 역할 및 중국 국내업체의 경영상황 악화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사대상 제품범위에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협회·정부 및 중국 내 이해관계자와 공동 대응하였다. 최종판정에서는 정제테레프탈산(PTA)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가 부과되고, 기타 테레프탈산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 사례는 반덤핑 대응에 있어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덤핑마진 산정 뿐만 아니라, 제품범위, 산업피해, 인과관계를 개별 방어책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 반덤핑 조사절차와 주요 조치

중국의 수입 반덤핑 조사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贸易救济调查局)이 담당한다. 상무부는 국내산업의 조사신청을 심사한 뒤 조사를 개시하고, 질문서 조사, 표본조사, 청문회,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덤핑과 산업피해를 조사한다. 최종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가 이를 결정하고 세관이 집행한다.

현행 「반덤핑조례(反倾销条例)」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공고일부터 12개월, 특별한 경우에도 추가 연장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동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조사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내생산자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양자의 총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청을 지지하는 생산자의 생산량이 전체 국내 동종제품 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① 개별 수출자의 덤핑마진이 2% 미만이면 해당 수출자를 제외하고 ② 전체 수입량이 무시할 수준이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일단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잠정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잠정 관세뿐 아니라 보증금, 보증서 기타 형식의 담보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조사개시 후에 최초 60일 동안에는 잠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 잠정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최종 판정에서 덤핑과 이에 따른 산업피해가 인정되면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세관이 이를 집행한다. 반덤핑관세액은 원칙적으로 수출자별로 확정되며 최종판정에서 확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 반덤핑관세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종료할 경우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몰재심(期终复审)을 통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최종판정이나 재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行政复议)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제도가 **"가격약속(价格承诺)"**이다. 덤핑 및 그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긍정적 예비판정 이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가격을 조정하거나 덤핑가격에 의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가격약속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가 이를 수락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잠정 반덤핑조치를 취하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가격약속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강제할 수 없으며, 상무부는 그 수락 여부를 판단할 때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제거 가능성, 효과적인 이행감독 가능성, 공공이익 및 우회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4. 중국 반덤핑 운용사례

최근 중국의 반덤핑 사례를 살펴보면, 반덤핑 제도 운용의 특징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2025년 7월 EU산 브랜디 사건에서 상무부는 실제로 산업에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결론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의 우려(实质损害威胁)'**를 인정하여 최종판정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덤핑마진은 27.7%~34.9%로 결정되었으나, 동시에 일부 EU 업계와 기업이 제출한 가격약속을 수용하였다. 참고로, 가격약속이 수락된 기업이 약속조건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기 사건은 중국 반덤핑 제도가 현실화된 손해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손해의 위협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가격약속이 실제 시장접근을 유지하는 협상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한국 기업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로 **스테인리스강 사건**을 소개한다. 중국은 2019년 EU(당시 영국 포함)·일본·한국·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으며, 일본산 조치는 2024년 7월 종료되었다. 반면에 EU·영국·한국·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일몰재심을 거쳐 2025년 반덤핑조치가 다시 5년간 연장되었다. 한국산의 경우, 포스코(POSCO)에는 23.1%, 기타 한국 기업에는 103.1%의 세율이 적용되고, 포스코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POSCO)의 기존 가격약속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동일한 한국산 제품이라도 기업별 대응 및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2026년 1월 13일 확정된 미국·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일몰재심(제3호)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상무부는 조치 종료 시 덤핑과 산업피해가 계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를 다시 5년 연장하였으며, 한국 기업별 적용 반덤핑관세율은 OCI(구 동양제철화학) 4.4%, 한화솔루션의 경우 8.9%에서 일부 기업은 113.8%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2026년 9월 7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Dichlorosilane) 사건공고(제37호)의 예비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상무부는 일본산 제품의 덤핑, 중국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및 양자의 인과관계를 잠정 인정하고, 2026년 9월 8일부터 수입 시 80.8%~99.2%의 보증금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해관계인에게 예비판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공고일부터 10일이었다. 아직까지 최종판정 전 단계이지만, 예비판정만으로도 통관단계에서 상당한 보증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사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5. 한국 기업의 대응전략 및 시사점

중국의 반덤핑 사건을 통상분쟁으로만 이해하면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사개시 이후 거래자료, 제품별 생산원가, 관계회사 거래, 중국 수출내역, 국내 판매내역 및 재무자료 사이의 정합성을 동시에 설명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도 중국 반덤핑 조사에 대한 핵심 대응으로 신속한 응소, 외부 전문가의 활용, 산업피해에 대한 적극적 반박, 협회 및 정부와의 공동대응이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중국 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기업이라면 수출가격의 변화, 제품별 원가배부 기준, 중국 거래처 및 관계회사 구조를 사전에 관리하는 한편, 중국 동종산업의 생산능력·가격·설비투자·재고와 수입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나아가, 조사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덤핑마진 산정 대응, 제품범위 제외 주장, 산업피해 및 비귀속 원인에 관한 경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제분석, 중국 하방 산업(downstream industry) 의견 확보,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또는 각종 재심의 활용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반덤핑 사건은 정상가액과 수출가격을 둘러싼 회계자료, 산업피해를 둘러싼 각종 경제자료, 제품범위와 동종제품성을 둘러싼 각종 기술자료가 법리와 결합되어야 한다. 중국의 반덤핑조치의 경우에는 일단 부과되면 일몰재심을 통하여 장기간 유지될 수 있으므로, 조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개별 반덤핑관세율의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향후 중국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후에는 생산공정, 원산지 또는 수출경로 변경이 반우회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최신 법령/판례 ▐

1.「신취업형태 노동자 권익보장 방법(의견수렴안)」(新就业形态劳动者权益保障办法（征求意见稿）), 2026.11.08 의견 제출 마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6년 10월 8일 교통운수부,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의료보장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동으로「신취업형태 노동자 권익보장 방법(의견수렴안)」(이하「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 성립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노동관리를 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규장(规章) 형식으로 노동법 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견수렴안」은 "신 취업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첫째, 노동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관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플랫폼이 규칙과 지시로 노동을 조직하면 서면 고용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플랫폼과 협력업체가 함께 노동관리를 할 때는 3자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영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의견수렴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단계 재위탁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로 고용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협력업체가 적법한 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 고용주체 책임을 집니다. 아울러 보수 결제 주기를 최장 1개월로 정했고, 벌금 등 징벌적 조치의 남용을 금지했으며, 연속 4시간 근무 시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보수, 근무시간, 평가, 계정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업은 48시간 안에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플랫폼 기반 업무를 협력업체나 가맹점에 위탁하는 기업은 노동관리 주체, 재위탁 구조, 보수 및 휴식 기준, 알고리즘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이 11월 8일인 만큼, 관련 규정과 내부 운영 현황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2.「국가지식재산권국·해관총서의 지식재산권 협동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国家知识产权局 海关总署关于强化知识产权协同保护的意见, 国知发保字〔2026〕30 号), 2026.10.14 공개

국가지식재산권국과 해관총서는 2026년 10월 8일「지식재산권 협동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10월 14일 이를 공개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세관 간 협력 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 기관 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상시화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특허 기초정보, 저명상표(驰名商标) 인정 정보 및 무효로 처리된 상표 정보 등을 세관에 제공하고, 해관총서는 세관 보호를 위해 등록(备案)된 상표·특허 정보와 압수·몰수 사건 정보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제공합니다. 둘째,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협조 및 전문적인 의견 제공을 강화합니다. 셋째, 중점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저명상표로 인정된 이력이 있는 상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단체상표·증명상표 및 태양광 등 중점 산업 분야의 권리자에게 세관 보호 등록(备案) 신청을 권장합니다. 세관은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산업정책 및 위험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한편, 대리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최근 비정상 특허출원 2,660건 등을 대리한 상해 소재 특허대리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고 해당 기관을 신용불량주체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모조품 생산·수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은 상표·특허에 대한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등록(知识产权海关保护备案)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상표·특허 권리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특허대리기관을 이용한다면 그 기관의 자격, 실제 담당자, 출원 업무의 품질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3.「전기오토바이 및 전기경량오토바이용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구사항」(电动摩托车和电动轻便摩托车用锂离子电池安全要求, GB 36672—2026), 2027.07.01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은 2026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업정보화부와 함께 제정한「전기오토바이 및 전기경량오토바이용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구사항」(이하「표준」)이 2026년 9월 28일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승인·발표되었음을 알렸습니다.「표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권고성 표준인 GB/T 36672-2018을 대체합니다.

「표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터리 셀·팩·시스템 세 단계의 안전 평가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둘째, 저온 충전, 충돌, 열폭주 등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해 저온 사이클 후 가열, 압착, 손잡이 강도, 열확산, 난연성, 표시 등의 시험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셋째, 동일 형식 판정 규칙을 명확히 하여 시험 절차와 판정 근거를 규범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해당 차량이나 배터리를 생산·판매하거나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적용 대상 여부와 시험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 시행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재시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기술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행일 이전에 대응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최고인민법원의 형사범죄와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刑事犯罪的民事纠纷案件若干问题的规定, 法释〔2026〕19号), 2026.09.22 시행

최고인민법원은 2026년 9월 21일「형사범죄 관련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규정」(이하「규정」)을 공개했으며, 해당 규정은 다음 날인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된「규정」은 2025년 8월 2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5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1998년 관련 규정과 이후의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사법해석과 지도문건에 분산되어 있던, 민·형사 쟁점이 서로 연관된 사건의 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규정」의 핵심은 그동안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온 '선형후민(先刑后民)'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민·형사 절차 병행(民刑并行)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나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과 분리하여 심리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민사청구는 법원이 접수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계약 체결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공범이 아닌 보증인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소송은 접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범죄와 관련된 계약의 효력, 형사절차에서 확보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활용, 재산 집행 간 연계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사기·횡령 등으로 형사 입건되더라도 형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금 청구, 계약상 책임 추궁, 보증책임 이행 청구 등 민사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습니다. 기업은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 체결 권한 및 대리권 관련 자료와 계약서, 거래 내역, 지급 증빙 등 주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 부다페스트

법무법인[유] 지평

상해 사무소